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83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2.

발 의 자:김영호·이형석·김홍걸

강준현 • 전용기 • 오영환

김의겸 • 아수잔비 • 김정호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,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,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·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 후단 중 ""추진위원"으로 본다"를 "추진위원"으로, "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"는 "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"로 본다"로 한다.

제4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추진위원회의 조직) ① ~	제33조(추진위원회의 조직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	5
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	
용한다. 이 경우 "조합"은 "추	
진위원회"로, "조합임원"은 <u>"추</u>	<u>"추</u>
진위원"으로 본다.	진위원"으로, "제35조에 따른
	조합설립 인가권자"는 "제31조
	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"
	<u>로 본다</u> .
제43조(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	제43조(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
및 해임) ① 다음 각 호의 어	및 해임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	
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	
될 수 없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
	<u>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</u>
	의 장,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
	배우자・직계존속・직계비속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